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02시 18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자문사항	3

자문사항

2014.04.17 조회수 605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13
담당부서	기획예산과
조례	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3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3조(직무)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 1. 여수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. 시에서 의뢰한 법적 검토 사항 3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 등에 관한 사항 4. 시의 자치법규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12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22 >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